####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387 제출연월일: 2024. 8. 29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

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,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,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·추징하도록 하는 한편,

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'공공기관'뿐만 아니라 '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'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,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(안 제13조의3, 제13조의4, 제21조 등)

'관세사회'의 기관 명칭을 '한국관세사회'로 변경함.

나. 탈세 상담 등의 금지(안 제13조의7 신설, 안 제17조의13제1항, 제1

8조제5호,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)

- 1)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 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.
- 2)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,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(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)

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'공공기관'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, 앞으로는 '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'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.

라.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·추징(안 제30조의2 신설)

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·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.

마.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(안 제31조제2항)

휴업, 폐업, 사무소 이전 · 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.

##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이의신청"을 "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"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및 제6항 중 "직무보조자를"을 각각 "사무직원을"로 한다. 제13조의3 본문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13조의4제1항 전단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7(탈세 상담 등의 금지)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(逋脫)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 중 "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"을 "사무직 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

- 2.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
-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
제15조의2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17조의4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7조의6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7조의13제1항 중 "제13조의5"를 "제13조의5, 제13조의7"로 한다.

제18조제5호 중 "제13조의2"를 "제13조의2, 제13조의7"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"제13조의5"를 "제13조의5, 제13조의7"로 한다.

제20조제4호 중 "제13조의2"를 "제13조의2, 제13조의7"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"(관세사회의 설립)"을 "(한국관세사회의 설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"관세사회"를 각각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직무보조자"를 "사무직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"관세사회"를 각각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1조의3제1항 중 "공공기관"을 "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"으로,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1조의4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"관세사회" 를 각각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"(관세사회의 감독)"을 "(한국관세사회의 감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"관세사회"를 각각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관세사회"를 각각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6조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6조의2 중 "관세사회"를 "한국관세사회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"관세사회"를 각각 "한국관세사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직무보조자를"을 "사 무직원을"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몰수·추징)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"관세청장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"으로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 자 또는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.
- 제3조(관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 21조에 따른 "관세사회"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"한국관세사회"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관세사의 직무) 관세사는	제2조(관세사의 직무)
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	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	
그 직무로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관세법」에 따른 <u>이의신청</u> ,	5 <u>과세전적</u>
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	부심사청구, 이의신청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사무소의 설치 등) ① ~ ④	제9조(사무소의 설치 등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	⑤
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	
를 채용하거나 <u>직무보조자를</u> 둘	<u>사무직원을</u>
수 있다.	<u>.</u>
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	6
사와 <u>직무보조자를</u> 지도·감독	<u>사무직원을</u>
할 책임이 있다.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3(관세사의 교육) 제7조	제13조의3(관세사의 교육)
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	
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	
하여 제21조에 따른 <u>관세사회</u> 가	<u>한국관세사</u>
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	<u> </u>
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	

한다. 다만, 휴업 등으로 연수교 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의4(업무실적 보고) ① 관 / 세사(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)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.이경우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·신청대리,청구대리,관세조사대리,관세·수출입신고등의상담 또는 조언 등업무성격에 따라구분하여작성하되수임액,수임건수,공직퇴임관세사인지여부,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제13조의4(업무실적 보고) ①
한국관세사회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7(탈세 상담 등의 금지)
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
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
으로 조세를 포탈(逋脫)하거나
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
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

- 제14조(비밀엄수 의무) 관세사나 제14조(비밀엄수 의무) ------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|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 무 종사 금지) ① 관세사는 공 무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국 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·③ (생 략)

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

<u>니</u>	되며,	이를 성	담하거니	<u> 구그 밖</u>
에	이와	비슷한	행위를	하여서
<u>는</u>	아니	된다.		

--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-----

제15조(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 무 종사 금지) ① 관세사는 공 무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- 1.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이 되는 경우
- 2.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
- 3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와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\_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회칙 준수 의무) 관세 제15조의2(회칙 준수 의무) ----한국관세사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17조의4(자본금 등) ① (생 략)

-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 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(增資) 하여야 한다.
- ③·④ (생 략)
- 제17조의6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의 제한 등) ① (생 략)
  - ② 제1항에서 "자기자본"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<u>대차대조표</u>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(제17조 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 금은 제외한다)을 뺀 금액을 말 하다.
- 제17조의13(준용규정) ① 관세법 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, 제9 조제5항·제6항, 제10조의2, 제 12조, 제13조, 제13조의2, <u>제13</u> 조의5 및 제14조를 준용한다.
  - ② (생 략)

<u> </u>
제17조의4(자본금 등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재무상태표</u>
<u>.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6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
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재무상태표
<u> </u>
제17조의13(준용규정) ①
<u>제13</u>
<u>조의5, 제13조의7</u>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등록의 취소 등) 관세청장	제18조(등록의 취소 등)
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	
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	
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	
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7조의3제5항, 제17조의5,	5
제17조의6, 제17조의7, 제17조	
의8제2항, 제17조의9 또는 제	
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	
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	
제10조의2, 제12조, 제13조, <u>제</u>	<u></u> 利
<u>13조의2</u> 또는 제14조를 위반	<u>13조의2, 제13조의7</u>
한 경우	
제19조(통관취급법인등) ① ~ ③	제19조(통관취급법인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	4
또는 종합물류기업(이하 "통관	
취급법인등"이라 한다)에 관하	
여는 제7조제3항, 제10조의2, 제	
12조, 제13조, 제13조의2, <u>제13</u>	<u>제13</u>
조의5 제14조 및 제16조를 <u>주</u>	조의5 제13조의7

용한다.

⑤ ~ ⑧ (생 략)

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관세청장 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

4.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

5. • 6. (생략)

## 제6장 관세사회

제21조(관세사회의 설립)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,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<u>관세사회</u> 를 설립하여야 한다.

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
,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제13조의2, 제13조의7</u>
5. · 6. (현행과 같음)
제6장 <u>한국관세사회</u>
레이크(라그리에서워서 사기) 소
제21조(한국관세사회의 설립) ①
최고하게
<u>한국관세</u> 시청
사회 ① 참구고내시청
② <u>한국관세사회</u>

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. ③ 관세사, 관세법인 및 통관취 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 -----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여야 한다.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④ 한국관세사회-----. ⑤ 한국관세사회-----⑤ 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 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「민 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.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⑥ 한국관세사회-----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. 제21조의2(회원에 대한 연수 등) 제21조의2(회원에 대한 연수 등) ① 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 ① 한국관세사회-----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 · 감 독하다. 1.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2.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 2. ----- 사무직원 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 ----- 한국관세사회-----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관세연수 원을 둔다.

③ 한국관세사회-----

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

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

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	
할 수 있다.	
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	4
필요한 사항은 <u>관세사회</u> 가 관세	<u>한국관세사회</u>
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	,
제21조의3(업무의 자문 등) ① <u>공</u>	제21조의3(업무의 자문 등) ① <u>국</u>
<u>공기관</u> 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	<u> 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</u>
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	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
여 <u>관세사회</u> 에 업무를 위촉하거	따른 공공기관
나 자문할 수 있다.	<u>한국관세사회</u>
② <u>관세사회</u> 는 제1항에 따라 위	② 한국관세사회
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	
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	
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	
제21조의4(정보공개) ① <u>관세사회</u>	제21조의4(정보공개) ① <u>한국관세</u>
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	사회
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	
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	
전문분야, 자격취득사항 등 필	
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	
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	②
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	
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<u>관</u>	<u>한</u>

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 이

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

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 정보를 <u>관세사회</u>에 제공할 수 있다.

#### ④ (생략)

- 제22조<u>(관세사회의 감독)</u> <u>관세사</u> <u>회</u>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 다.
- 제24조의2(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) ① 관세청장은 제18조,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,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<u>관세사회</u>는 제1항에 따라 통 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 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.
  - ③ (생 략)

제25조(유사명칭 사용금지 등) ① 제7조, 제17조의2 또는 제19조

③
한국관세사회
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한국관세사회의 감독) 한
국관세사회
제24조의2(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
공고 등) ①
한
<u></u>
국관세사회
② 한국관세사회
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유사명칭 사용금지 등) ①

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 조에 따른 <u>관세사회</u>가 아닌 자 는 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 법인 또는 <u>관세사회</u>나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② (생 략)

제26조(위임과 위탁)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6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관세사자격심의·징계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관련 전문기관·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27조(징계)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<u>한국관세사회</u>
<u>한국관세사회</u>
 ②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위임과 위탁)
한국관세사회
  제26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
의제)
<u>한국관세사회</u>
 제27조(징계) ①
시[21:1(경계) ①

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 ·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. 다만,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 ·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<u>관세사회</u> 회칙을 위반한 경 우
- ②・③ (생 략)
-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·징 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 른 관세사 또는 <u>직무보조자를</u> 채용할 수 없다.

⑤ ~ ⑦ (생 략) <신 설>

<u>한국관세사회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<u>한국관세사회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4
<u>사무직원을</u>
<u>.</u>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에30조의2(몰수·추징) 제29조제3
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
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
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

제3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<u>관세</u> ② ----- <u>대통</u> <u>청장</u> 또는 세관장이 부과·징수 한다.

은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한다.

제3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세청장 -----

----.